

KCCI ESG NEWSLETTER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2025. NOV

전문가 기고

안전보건 이슈의 관리방안으로서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안점

ESG 주요 현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면시행과 중소·중견기업의
대응과제

국내외 주요 ESG 뉴스

ESG 주요 통계

ESG 금융
ESG 평가
기타 통계



전문가 기고

안전보건 이슈의 관리 방안으로서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안점

김대연

법무법인(유한)화우 변호사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
핵심요소이다.”

일터에서의 안전보건은 사회(S) 영역의 주요 평가항목에 해당한다. 국내외 주요 ESG평가기관들은 대체로 산업안전 관련 지표를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25년 7월 경 서스틴베스트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재해 이슈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중요 이슈 중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 또한 안전보건 관리가 ESG의 기본이고, 비용이 아닌 투자로서 경영의 일부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투자 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ESG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안전보건이 ESG 평가에서 점점 중요하게 되고 있다면, 뒤따라오는 질문은 ‘안전보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강조되는 것이 바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이다.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주안점은 기업이 스스로 생산활동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등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 핵심요소이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산업 안전보건 정책과 법률에서 위험성평가는 매우 자주 등장하여 왔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험성평가 실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사건 조사 및 수사 실무에서도 위험성평가는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잡았다.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절차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성평가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통해 세부적인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지침은 위험성평가를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3호).

위험성평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할까? 이에 대해 지침은 사전 준비(제9조),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제10조), 위험성 결정(제11조),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제12조),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제13조)와 기록 및 보존(제14조)의 단계에 따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안전보건 이슈의 관리 방안으로서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안점

위험성평가의 주요 주의점

많은 기업들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재해, 특히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실제 줄어드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들도 있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효적이지 않는 형식적인 의무 이행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염려의 연장선상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효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까? 필자의 사전 컨설팅 및 사후 산업재해 조사 및 수사 실무 대응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정보 파악에 기초한 위험요인 발굴

작업내용, 작업할 때 사용하는 기계·기구 또는 장비, 작업인원, 작업방법, 작업장소 및 환경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작업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할 만한 위험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해 보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 작업방법이 실제와는 다른 경우, 작업 할 때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 등이 적지 않게 확인된다.

위험성평가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까지 모두 다룰 수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가 빠져서는 안 된다. 위험성 평가 실시를 위한 대부분의 정보는 이미 회사 자산, 인사 관련 업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사업활동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안전은 안전부서가 챙겨야 할 영역으로 미루어 두다 보니 필요한 정보들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다면, 사실과 다른 엉뚱한 내용에 기초하여 위험요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업 운영을 위한 인사, 재무 등 업무영역과 안전업무 영역에서 정보가 서로 순환되어 반영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실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실제 작업현장에서는 미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해진 것(WAI: Work As Imagined)과 제반 여건에 적응하여 실제 실행하고 있는 것(WAD: Work As Done)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차이가 항상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되, 실제 실행내용을 분석하여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 이슈의 관리 방안으로서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안점

지속적인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설계

위험성평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안전관리를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물은 수백 페이지의 서류 뭉치로 남고, 실제 안전관리는 그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식적인 위험성평가가 실제 안전성 제고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위험성 감소대책의 일회적인 이행을 넘어서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가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 하나로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의 지속적인 보완·개선을 들 수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백서에서도 적절하게 지적하였듯이, 작업표준서와 위험성평가는 별개가 아니다. 작업안전분석(JSA: Job Safety Analysis)에 따라 작업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에 따른 위험성을 확인·결정 및 분석함으로써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위험성을 인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맺음말: 선제적 안전관리 방안으로서 위험성평가의 자리매김

위험성평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입법례를 살펴 보더라도 사업장 안전관리의 기본으로 정착되어 있다. 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에 관하여 선진 안전보건 법제나 연구 결과들은 공통적으로 ‘선제적’(proactive)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관련 동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감소대책을 마련·이행하도록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는 최근 몇 년간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부상하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 또는 보완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이 오히려 형식적 안전관리를 강화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방향이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선제적·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이끌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 하에 전사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제는 안전도 경영의 일부임을 슬로건을 넘어선 하나의 사실 내지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SG 주요 현안

탄소국경조정 제도(CBAM) 전면시행과 중소·중견 기업의 대응과제

“보고”를 넘어,
사업전략의 문제로

“ 2026년 이후의
CBAM은 ‘탄소가
곧 원가이고, 경쟁력’이
되는 제도입니다. ”



1. 2026년 1월 1일, ‘진짜 CBAM’이 시작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이미 2023년 10월부터 ‘전환기(Transitional phase)’가 시작되어, 분기별 배출량 보고만 의무인 학습 단계였습니다. 이 전환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지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비용부과 체계(Definitive regime)로 전환됩니다.

전환기간	확정기간
2023.10~2025.12.31	2026.1.1 이후
EU 수입자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내재(embedded) 탄소배출량을 분기마다 보고만 함. 금전적 부담은 없음.	EU 수입자는 수입 물량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에 비례하여 CBAM 인증서 (CBAM certificates)를 구매·제출해야 하며, 이 인증서 가격은 EU ETS(배출권 거래제) 가격을 반영함. 첫 인증서 제출은 2027년, 2026년 수입분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

우리나라의 경우, 6개 CBAM 품목 중에서도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이 직격탄입니다. 2023년 기준 6개 품목의 对EU 수출액 46억 달러 중 철강만 42억 달러(약 5조 6천억 원)을 차지합니다. 대한상의 SGI 분석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의 CBAM 인증서 비용은 2026년 851억 원 → 2034년 5,589억 원, 9년 누적 약 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오는데도 중소 중견기업 담당자들 중에는 “우리 회사가 CBAM 대상인지 모르겠다”는 중소·중견기업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2. 먼저 던져야 할 세 가지 질문

CBAM 대응의 출발점은 복잡한 EU 문서가 아니라, 다음 세 가지 진단 질문입니다.

첫째, 우리 제품이 CBAM ‘대상 품목’인가?

기업은 최종적으로 제품 원단위 배출량에 해당하는 제품당 CO2e 배출량(고유내재배출량, SEE)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우리 제품이 CBAM 대상인지 여부는 수출신고필증 35 세번부호 내에 작성하는 HS코드 및 EU에 보고된 제품별 CN코드와 대조하여야 동일할 경우 CBAM 대상 제품입니다. 즉 코드 기준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완제품 수출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제품 중에는 슬래브·빌릿·코일·압출품 등 중간재도 CBAM 품목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EU로 수출하지 않더라도, EU에 수출하는 국내 대기업에 공급하는 1·2차 벤더라면, 조만간 CBAM 방식의 배출량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탄소국경조정 제도(CBAM) 전면시행과 중소·중견 기업의 대응과제

“보고”를 넘어,
사업전략의 문제로



둘째, 제품 단위의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갖고 있는가?

많은 기업이 공장 단위 총배출량(환경정보공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등)은 갖고 있지만, CBAM은 “제품 1톤당 CO₂e 톤(tCO₂e/t-product)”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조직·운영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다음은 설비·공정별 배출량을 제품별로 배부하는 내부 원가(원단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EU CBAM은 최종 CBAM 대상 제품의 업스트림(전구물질)을 포함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CBAM 대상 제품별 공급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CBAM배출량 산정대상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셋째, EU 수입자와의 역할·책임이 계약상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CBAM은 결국 EU 수입업자와의 역할 책임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적 의무 주체는 EU의 승인 CBAM 신고자(Authorized CBAM declarant) 이지만, 이들이 CBAM 보고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생산자의 내재배출량 데이터가 필수입니다. 앞으로는 구매계약·장기공급계약에 CBAM 관련 데이터 제공·검증·책임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화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예” 또는 최소한 “대략은 파악하고 있다”라고 답할 수 없다면, CBAM 대응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3. CBAM 기준 탄소배출 보고범위 이해하기

CBAM에서 말하는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은 일반적인 탄소발자국 (Product Carbon Footprint)과 차이가 있습니다. PCF도 제품별 탄소배출량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유사하지만 규정상 조금 더 좁고 명확한 범위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CBAM 평가에서는 업스트림이나 다운 스트림의 운송 및 유통단계는 제외됩니다. 즉 수출 시 이동하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량은 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CBAM 평가에서는 폐기 및 재활용단계도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비단위(Installation 단위)

- CBAM은 기업 전체가 아니라 제품의 “설비(installation)” 단위를 기본으로 합니다.
- 하나의 공장 안에서 제선·제강·압연이 모두 있는 경우, 각 공정의 배출을 적절히 나누어 제품에 배부해야 합니다.

2. 직접배출과 간접배출(Direct & Indirect emissions)

- 직접배출(Direct):
 - 연료 연소, 공정 배출, 외부에서 공급받는 증기·열 사용에 따른 배출 등 (단, 사무도 및 법 인차량은 모든 직, 간접배출에서 제외)
- 간접배출(Indirect):
 - 공정에 사용되는 전력 생산에서 발생한 배출

탄소국경조정 제도(CBAM) 전면시행과 중소·중견 기업의 대응과제

“보고”를 넘어,
사업전략의 문제로



- 전환기(2023~2025)에는 직접·간접배출 모두를 보고해야 하고, 2026년 이후 확정 단계에서는 시멘트 비료 부문에 대해서는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수소에 대해 우선 직접배출 중심으로 인증서 의무가 적용됩니다. 간접배출의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공정에 따라 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전구물질(Precursors)의 내재배출

- 슬라브, 빌릿, 알루미늄 잉곳 등 CBAM 전구물질을 투입해 다른 CBAM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전구물질 자체의 내재배출량(직·간접)을 제품 내 배출량에 포함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공급망 내에서 전구물질 공급자와의 배출 데이터 교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CBAM의 내재배출량은 “설비 수준 → 공정 수준 → 제품 수준”으로 배출량을 내려 보내고, 여기에 전구물질의 내재배출까지 더한 값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EU CBAM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꼭 써야 하는가?

많은 기업들이 “EU가 만든 CBAM 커뮤니케이션 엑셀 템플릿을 반드시 써야 한다”라고 오해합니다. 실제로는 법적 의무는 아니고 ‘권고 도구’입니다.

EU 집행위가 제공하는 엑셀 템플릿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비 운영자가 연료·원료 사용량, 전력·열 사용량, 전구물질 투입량 등 데이터를 입력하면
- 직·간접배출량, 제품별 내재배출량을 자동 계산해 주고
- 이를 EU 수입자에게 일관된 형식으로 전달(Communication Sheet)할 수 있도록 돋는 도구입니다.

국내 중소·중견 기업 입장에서의 현실적인 접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식 템플릿 구조를 ‘참고모델’로 사용하되,

2. 자사 ERP·MES·원가시스템에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 구조에 맞게 국문 버전의 사내 템플릿을 만들고, 필요 시 EU 고객 요구에 맞춰 공식 양식이나 민간 솔루션 포맷으로 변환 해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엑셀 파일을 쓰느냐”가 아니라, 국제 기준에 맞는 배출량 산정 로직과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추었느냐입니다.

| 현장의 목소리 |

‘CBAM? 우리한테 적용되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래는 국내 한 알루미늄 압출 중견기업의 실제 인터뷰(익명 인용)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ESG 주요 현안

탄소국경조정 제도(CBAM) 전면시행과 중소·중견 기업의 대응과제

“보고”를 넘어,
사업전략의 문제로



Q. CBAM을 처음 인지한 시점은?

“2024년 EU 고객사로부터 ‘내재배출량 데이터를 제출해 달라’는 이메일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는 CBAM이 대기업 수출업체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Q.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우리는 공장 단위 총배출량만 알고 있지, 제품별 CO₂e 산정 경험이 없었습니다. EU 템플릿을 보니 ‘설비 단위’ ‘전구물질’ ‘배출계수’ 등 낯선 용어가 많아서 스스로는 해석이 안 됐죠.”

Q.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습니까?

“처음에는 단순 활동자료(연료·전력 사용량)만 넘겼습니다. 그런데 EU 고객사가 ‘설비별·공정별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자료를 반려했습니다. 결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기관 컨설팅을 받아 설비→공정→제품 단위 배부모델을 만들고 나서야 요구를 충족했습니다.”

Q. 가장 필요한 지원은?

“우리 같은 기업은 보고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더 모릅니다.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 맞는가? 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CBAM은 사실 환경 문제, 배출량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생산관리·원가관리 문제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별기업에 맡겨버리는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부나 자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 CBAM이 단순 보고 문제가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제조·원가관리 역량을 재정비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6단계 CBAM 대응 로드맵

CBAM은 결국 “탄소가 원가가 되는 제도”입니다. 보고 의무를 넘어서, 중소·중견기업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실무 과제를 6단계 로드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CBAM 영향 진단: 품목·거래·규모 파악

- 우리 회사 제품의 HS 코드와 EU 수출 여부, 수출 규모를 우선 정리합니다.
- 직수출이 아니더라도 EU에 수출하는 국내 대기업에 납품한다면, CBAM 데이터 요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대한상의 SGI의 산업별 비용 추정 결과처럼, EU ETS 가격(예: 80~100 €/tCO₂)을 가정해 CBAM 비용이 단가·마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탄소국경조정 제도(CBAM) 전면시행과 중소·중견 기업의 대응과제

“보고”를 넘어,
사업전략의 문제로



(2) 배출데이터 체계 점검: 계측·원단위·검증

- 연료·전력·원료 사용량에 대한 “계측 인프라(미터·계량기)”를 점검하고,
- 공정별 에너지·원료 원단위(예: kWh/t, Nm³/t)를 정리합니다.
- 기존에 하고 있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에너지 심사, ISO 14064/50001 등의 데이터와 CBAM 요구사항(설비·공정·제품 단위 배출량)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매핑합니다. 아마도 겹치거나 분리되는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3)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 자체 내부 모델 구축

- 설비 단위 연간 배출량 → 공정별 배출량 → 제품별 활동량으로 나누어
 - 제품별 내재배출계수(tCO₂e/t-product)를 산출합니다.
- 전구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전구물질의 내재배출 계수를 받아 반영해야 합니다.
- 이 과정에서 EU 템플릿이나 민간 솔루션(PCF/CBAM 계산 소프트웨어)을 활용하면 초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컨설팅을 참고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기업이 EU CBAM 배출량 산정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EU 고객과의 CBAM 파트너십 정립

- EU 수입자는 CBAM 신고 미이행·오류 시 톤당 10~50유로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가격·계약 조건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중소·중견 공급업체도
 - 데이터 제공 일정,
 - 추가 정보 요청 및 현장 실사 범위, 보고서 검증관련 내용,
 - 잘못된 데이터에 따른 책임 범위 등을 공급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장기적으로 “감축”과 “조달전략”을 함께 보는 내부 탄소전략

- CBAM은 단순히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 고탄소 공정을 저탄소 공정으로 바꾸는 투자(예: 전기로 확대, 재생에너지 사용, 연료 전환)와
 - 원자료·전구물질 조달전략(스크랩 비중 확대, 저탄소 슬래브·빌릿 구매)를 동시에 검토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 자금·기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개별 투자보다는
 - 산업단지 단위 공동 설비, PPA(전력구매계약), 클러스터 기반 감축 프로젝트 참여 등도 현실적인 옵션입니다.

ESG 주요 현안

탄소국경조정 제도(CBAM) 전면시행과 중소·중견 기업의 대응과제

“보고”를 넘어,
사업전략의 문제로



(6) 정부·업종단체 지원 프로그램의 적극 활용

- EU는 2025년 10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CBAM 절차 간소화(simplification) 규정을 채택해 신고자 등록, 인증서 구매·반납 일정 등을 정비했습니다. 복잡성은 여전히 크지만,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은 점차 높아지는 방향입니다.

국내에서도 산업부·환경부, 대한상의, 무역협회, 한국환경공단 CBAM 게시판, CBAM 가이드북, 업종별 설명회, 배출량 산정 컨설팅, 공용 계산 툴 등이 순차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 모든 규정을 직접 해석하기보다, 공신력 있는 가이드와 공동 프로젝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비용 대비 효과적입니다.

EU, CBAM 절차 간소화(simplification) 규정

지난 2025년 9월 10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Omnibus I’ 입법 패키지 중 하나인 CBAM 단순화(simplification) 규정이 정식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9월 29일, EU 이사회 공식 의결로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고, CBAM 개정안은 곧 EU 공식 관보(Official Journal)에 게재될 예정이며, 게재 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됩니다. 이번 개정은 제도의 틀과 적용 범위는 유지하되, 운영 절차·신고 방식·예외 기준을 손봐 초기 이행 부담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 비교 정리

구분	기준	개정
면제 기준	선적당 150유로* * 적용 대상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연간 누적 총수입량 50톤* * 적용 대상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전력 및 수소 제외)
인증서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판매 : 2026년 1월 1일부터제출 : 매년 5월 31일환매 : 매년 6월 30일일괄 취소 : 매년 7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판매 : 2027년 2월 1일부터제출 : 매년 9월 30일환매 : 매년 10월 31일일괄 취소 : 매년 11월 1일
	분기별 보유 비율	80% 50%
	환매 가능 수량	전년도 구매한 인증서의 1/3 * 단, 실제 제출 의무 수량 이내로 제한
수입신고자	승인 심사	심사 절차 중, 관할 당국의 역내 회원국 간 협의 절차 의무 역내 협의 절차는 필요한 경우 진행
기본값	사용 요건	실제 배출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본값 사용 가능 실제 배출량 또는 기본값 중 자율 선택
	결정 방식	신뢰 데이터 부재 시, EU 역내 고배출 시설들의 평균값으로 설정 신뢰 데이터 부재 시, 상위 10개 고배출 수출국의 평균값으로 설정
	검증 면제	기본값을 활용한 배출량에 대해서도 검증 필요 EU가 제공하는 기본값 활용 시, 배출량 검증 면제
배출량 산정	산정 예외	- △철강 및 알루미늄의 특정 마감 공정에서 발생한 배출량, △EU-ETS 적용 전구체 생산의 배출량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표: KOTRA자료 25-103 직접 인용함

탄소국경조정 제도(CBAM) 전면시행과 중소·중견 기업의 대응과제

“보고”를 넘어,
사업전략의 문제로



6. 결론: CBAM은 장기적으로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모델”的 문제가 될 것이다.

CBAM 전면 시행을 앞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분기보고 양식을 어떻게 채우느냐”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면 안됩니다. 2026년 이후의 CBAM은 “탄소가 곧 원가이고, 경쟁력”이 되는 제도입니다.

- 데이터가 없는 기업은 가격협상에서 밀릴 것이고,
- 감축 로드맵이 없는 기업은 EU 시장에서 점점 주변부로 밀려날 것입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공급망에 깊게 연결된 한국의 중소·중견기업에게 CBAM은 환경규제가 아니라, 수출 포트폴리오, 공정 투자, 조달전략, 고객 포지셔닝을 다시 설계하게 만드는 사업전략의 변수입니다.

2026년 1월 1일은 “보고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 날”이 아니라, “저탄소 경쟁력 없이는 EU 시장이 버거워지는 첫 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식을 공유하는 순간, CBAM 대응은 더 이상 두꺼운 EU 규정집이 아니라,

우리 공장·우리 제품·우리 거래선에 맞는 현실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국내외 주요 ESG 뉴스

지속가능경영원



COP30 폐막: '무치량 결정문' 채택 및 한국 대표단 활동 성과

외교부 | 2025.11.23 | https://toronto.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6685

“분산에너지 시대 ICT가 전력망 재편”... 한전KDN 탄소중립형 에너지 기술 제시

산업일보 | 2025.11.28 | <https://kidd.co.kr/news/244114>

실패한 목표 빈손으로 COP30에 가는 한국 정부?

슬로우뉴스 | 2025.11.09 | <https://slownews.kr/148741>

“또 대표 구속... 중대재해처벌법 4번째 적용” 울산 차부품업체 대표 구속 기소

아웃소싱타임즈 | 2025.11.28 | <https://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51>

한전 공기업 최초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

뉴데일리 | 2025.11.27 |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11/27/2025112700335.html>

CJ프레시웨이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비즈월드 | 2025.11.27 | <http://www.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661>

깨끗한나라 제지업계 최초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연합뉴스 | 2025.11.26 | <https://www.yonhapnews.co.kr/view/AKR20251126064900030>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지역사회공헌인정제 3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뉴스1 | 2025.11.28 | <https://www.news1.kr/industry/general-industry/5991816>

공정위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우미건설에 과징금 483억

한겨레 | 2025.11.17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29604.html

공정위 '회장 딸 회사 몰아주기 의혹' SM그룹 제재 착수

조선비즈 | 2025.11.27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5/11/27/TZCUXJKAUVG4RLO4D3QYARXIGE/

넥슨게임즈 ESG는 나 몰라라... 게임업계 지배구조 부문 '최하위'

조선비즈 | 2025.11.27 |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5/11/27/JWFMPXWAZRFA7CSXKOLXBSKOIA/>

한솔홀딩스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 6년 연속 A

뉴스1 | 2025.11.27 | https://mobile.news1.com/view/NISX20251127_0003419496

하나금융 KCGS ESG 평가 '통합 A+'...전 부문 우수성 인정

이투데이 | 2025.11.19 | <http://38.co.kr/html/news/?o=v&m=&key=&no=1856936&page=6>

신세계I&C 2025년 ESG 평가 통합 'A' 등급 획득

비즈니스포스트 | 2025.11.20 |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07041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종목 수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녹색채권	290	301	295	301	308	310	314	317
사회적채권	1,718	1,725	1,704	1,724	1,741	1,751	1,769	1,763
지속가능채권	243	224	236	225	221	221	217	215

(2)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잔액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녹색채권	273	263	260	257	258	264	267	269
사회적채권	2,162	2,130	2,120	2,112	2,111	2,110	2,108	2,077
지속가능채권	167	164	164	160	160	158	158	159

자료: KRX 사회책임투자채권-통계-상장현황

2. ESG 평가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25.10.31)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4	20	38	78	131	161	204	223

(2)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25.10.31)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지배구조보고서	101	213	224	231	355	380	530	509

자료: KRX ESG 포털

3. 기타 통계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누적 수('25.9)

* CF100 참여 기업 수:
177개 ('25.9)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국내	-	-	6	14	27	36	36	36
글로벌	141	204	269	335	393	426	439	446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https://24-7cf.com/>

담당자 및 문의처

최영준 연구원 | E. cyj@korcham.net

*지속가능경영원

김예원 연구원 | E. kwy1208@korcham.net